

2023년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(주야간보호) 이용계약

○ 운영규정의 개요

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는 지역사회 내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이나 기능장애로 가족들이 부양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센터이용을 통하여 기초생활에 관한 수발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및 재활서비스, 기타 교양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과 심신의 기능향상을 도모하며 또한 부양가족의 경제적, 신체적,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켜 약화된 가족기능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.

○ 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○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: 재가급여(주/야간보호)

○ 입소정원 : 28명

○ 이용대상 : 노인장기요양 1~5등급,인지지원등급 (치매, 중풍, 심신허약 등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)

○ **계약기간** :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.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에는 계약종료가 된다. 등급변경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개별상담을 통해 재계약을 할수 있다.

○ 이용시간 : 월~금 08:00 ~ 22:00(공휴일은 휴무) 토 08:30~17:30

○ 주요서비스

상담서비스, 일상생활지원서비스, 인지기능돌봄서비스, 건강돌봄서비스, 특별활동지원서비스, 가족지원서비스, 특화사업 등

○ 구비서류
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진단서, 치매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, 처방전

○ 이용절차

전화 및 내방 접수 ▶ 내방상담 ▶ 구비서류제출 ▶ 임시적응기간 ▶ 판정회의
▶ 입소확정

○ 이용료

-본인부담비용 : 일반대상자(15%), 경감대상자(9%/6%), 기초생활수급권자(0%)

	장기요양 1등급	장기요양 2등급	장기요양 3등급	장기요양 4등급	장기요양 5등급	장기요양 6등급
3~6시간	38,630	35,760	33,010	31,510	30,000	30,000
6~8시간	51,780	47,960	44,270	42,770	41,240	41,240
8~10시간	64,400	59,660	55,080	53,580	52,050	52,050
10~12시간	70,950	65,720	60,720	59,190	57,690	52,050
12시간 이상	76,080	70,480	65,110	63,600	62,100	52,050
비급여 (식대,간 식재료비)	* 비급여: 중식 4,000원/ 간식 1,500원(오전,오후)/ 석식 4,000원					
등급외자	* 24,900원/일(주간,중식 포함), 야간·주말 이용시 이용료 및 교통비 별도 산정					

1. 등급별 서비스 비용은 연도별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표(재가급여)에 근거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.
2.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의 15%이며,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1/2로 경감하여 7.5% 감면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한다.
3. 비급여 항목(식사재료비, 간식비, 의료비 등)은 본인부담으로 한다.
 - 1) 시설은, 재가급여서비스(주야간보호)를 제공한 경우, 이용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한 비용액(고시액)중 본인부담금 15%, 보험료감경대상자 9%, 차상위감경대상자 6%를 청구한다.
 - 2) 시설은, 법정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족에게 사전 공지한다.
 - 3) 비용액 중 비급여 부분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.
 - 4) 식사 및 간식제공에 필요한 비용
 - 5) 재가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이용한도액이 넘어 공단에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.
 - 6) 등급 외 이용자는 월(20일 한도 이용기준)을 이용료로 청구한다.
(주간 중식비 포함, 석식 별도)
 - 차상위는 이용료의 50% 수납, 일반은 100% 수납
 - 7)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.
 - 8) 월이용료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.

○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

- 1)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,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.
- 2) 월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.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, 이에 대한 '서비스변경계획서'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.
- 3) 매년 보건복지부(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.)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등이 변경된 경우,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

○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

- ① 이용인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이용인의 성격,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.
- ② 가능한 이용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.
-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이용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, 이용인이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. 다만, 이용인이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④ 이용인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용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⑤ 이용인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인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,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.
- ⑥ 이용인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처리한다.
- ⑦ 이용인에게 의사소통 불능,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⑧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⑨ 서비스 제공 도중 이용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 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,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촉탁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.
- 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

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.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다.

○ 구비서류

센터이용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- ① 데이케어센터 이용신청서 및 서약서
- ② 치매진단서 (신경정신과 전문의) 1매
- ③ 건강진단서 1매
- ④ 주민등록등본 1매
- ⑤ 장기요양인정서
- ⑥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(해당자)
- ⑧ 처방전

* 기타 경감대상자의 경우 확인서를 붙임한다.

○ 이용자 권리

센터는 이용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.

1. 인권

1) 비밀보장 : 이용자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2) 정보제공

가. 서비스 정보 제공 :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와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고 이용자와 가족이 서명한 문서를 보존한다.

나. 자기결정권 : 직원은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. 다만, 서비스 계획을 위한 사정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며, 이용자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한다.

다. 불만처리 : 센터는 이용자가 겪게 되는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한 불만이 처리되는 과정을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만 및 불편처리 방침이 문서화하고 직원들이 숙지한다. 최장 10일 이내(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)에 처리되어 해당자에게 모든 처리과정이 전달되어야한다. 진정함을 설치 운용하여 지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 한 후 진정서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.

3) 차별금지 : 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, 장애, 인종, 종교, 문화, 언어,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으며,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

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야한다

4) 참정권의 보장 : 이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선거권을 가지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.

5)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: 센터는 내부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체적인 제한을 최소화하여야한다.

6) 자치활동 : 센터 내의 자발적인 모임, 여가활동, 문화활동, 자치회 등이 이용자의 주도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○ 보호자 의무

① 이용자의 가족은 본 센터에서 실시되는 가족모임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, 본 센터에서 요청하는 기타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.

② 이용을 중단 또는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
③ 보호자는 이용자의 이용현황등 입소관련 자료를 요청할수 있다.

○ 신원인수인의 권리 . 의무

① 권리 :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,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,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,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,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
② 의무 :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(해외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),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○ 종결결정

센터 이용 중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종결판정회의에 상정되어 대상자의 퇴소가 결정된다.

① 전염성 질환의 발병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노인성 신체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③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

④ 타입소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 행동을 취할 경우 센터장 합의 하에 퇴소 할 수 있다.

⑤ 사망 및 비용 곤란한 경우

⑥ 등급판정의 재사정에서 등급에 변화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